

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

[illegible]

※ 작성요령: 연구계열별 연구기관명은 가나다 순으로 작성하고, 기업규모란은 대기업, 중견기업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합니다),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말합니다) 또는 벤처기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